

의안번호	제 42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발의자	육미선 의원 등 8명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2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의안 번호	42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발 의 자 : 육미선 · 박상돈 · 박형용
 심기보 · 이상욱 · 최경천
 이숙애 · 윤남진 의원

1. 제안이유

- 충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정보 수집 및 정기 실태조사(3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다.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라. 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 도 내 센터 현황(7) : 충북광역새일센터(1), 산단형 새일센터(1), 기초새일센터(5)
-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을 여성취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45 호
- 다. 협 의 : 여성정책관
- 라. 비용추계 : 불임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증가를 위한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발굴 및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제활동 촉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6.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7.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계부서 및 도 내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8.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구직자 등 대상 홍보활동 지원
 9.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운영 지원
 10.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실태조사, 경제활동 촉진사업, 광역새일센터 운영비 지원 등

3. 관련조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 제11조
-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새일센터 지정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지역맞춤형포함),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지원
-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활성화
- 청년여성희망일터, 창업여성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충북여성인턴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다. 재원조달방안 (5개년 : 2018~2022년)

- 국 비 : 12,296,546천원 (48%)
- 도 비 : 6,405,540천원 (25%)
- 시·군비 : 6,752,655천원 (27%)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박 현 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990,059	5,065,245	5,081,334	2,155,869	5,195,234	25,454,741	
국 비	2,418,581	2,438,542	2,458,902	2,479,669	2,500,852	12,296,546	
도 비	1,245,420	1,286,971	1,268,851	1,280,969	1,323,329	6,405,540	
시군비	1,326,058	1,339,732	1,353,581	1,362,231	1,371,053	6,752,655	
세 출	4,990,059	5,065,245	5,081,334	2,155,869	5,195,234	25,454,741	
새일센터 지정운영	1,996,088	2,036,010	2,076,730	2,118,265	2,160,630	10,387,723	
취업지원센터 운영	263,200	268,464	273,833	273,833	273,833	1,353,163	
새일여성인턴	813,000	813,000	813,000	813,000	813,000	4,065,000	
직업교육훈련	668,249	668,249	668,249	668,249	668,249	3,341,245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203,776	203,776	203,776	203,776	203,776	1,018,880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활성화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청년여성희망일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창업여성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중사자처우개선비	100,8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504,000	
충북여성인턴	676,946	676,946	676,946	676,946	676,946	3,384,730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30,000			30,000	60,000	
재원 조달	4,990,059	5,065,245	5,081,334	2,155,869	5,195,234	25,454,741	
의존 재원	소 계	3,664,001	3,725,513	3,727,753	3,760,638	3,824,181	18,702,086
	보조금	3,664,001	3,725,513	3,727,753	3,760,638	3,824,181	18,702,08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1,326,058	1,339,732	1,353,581	1,362,231	1,371,053	6,752,655	
기 타 (민간 자부담)							